

[전학년 대상]



가정통신문

하점초 학교규칙(학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배움이 즐거운 교실
행복한 미래인재로
성장하는 하점교육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드릴 말씀은

하점초교 학칙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 2024 인천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이 반영된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신중하게 읽어보시고 의견 있으신 가정에서는 **4월 2일(화)까지 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1. 제출 기간: 2024. 3. 29.(금) ~ 4. 2.(화), 5일간
2. 제출 대상: 본교 학생 및 학부모, 교원 중 의견 있으신 분
3. 제출 내용: 검토 의견서
 - 검토 의견서(양식)탑재 장소: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
4. 제출 방법: she1001@ice.go.kr로 검토 의견서 제출
5. 기타 사항
 - 하점초 학칙 개정(안) 및 신규대조표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 확인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2024. 3. 28.

하 점 초 등 학 교 장

다음 장에 계속 ➡

2024 하점초등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1장 제4조 (학칙의 기재 사항 및 대상) 본교의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본교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1. 총칙 2.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3.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4. 교과·수업일수 및 교과와 과정수료의 인정 5.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6.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7.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8. 수업료·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징수 9.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10.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11. 학교 시정 12. 학칙 개정 절차 13.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1장 제4조(학칙의 기재 사항 및 대상) ① 본교의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본교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교과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및 학업 중단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 제·개정 절차 10. 그 밖에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2장 제6조 (학년·학기) <신설>	제2장 제6조 (학년·학기) ① (※법 제26조 제①항) ② (※시행령 제44조) ③ (※초·중등교육법 제26조 제②항)
제2장 제7조 (휴업일) ① 2. 대체공휴일 3. 여름·겨울·학년말방학 4. 개교기념일(7월 3일) 5. 효도체험학습일(어버이주간, 추석주간, 설주간) 등 자율 휴업일 ③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한다.	제2장 제7조 (휴업일) ① 2. 대체공휴일, 재량 휴업일 3. 여름·겨울휴가, 학년말휴가, 계절휴가 4. 개교기념일(7월 3일) ③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강화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7조 제②항)
제3장 제9조 (학생정원) ②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제3장 제9조 (학생정원) ②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시행령 제29조, 제51조)
제4장 교과·창의적체험활동·수업일수·평가 및 과정수료·졸업의 인정 제10조 교과·창의적체험활동 ①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정한다. ② 인천광역시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에 따라 본교 교과는 아래와 같이 편성 운영한다. 1. 1-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2. 3-4학년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3. 5-6학년의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③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영역으로 한다. 다만 1, 2학년은 체험활동 중심의 ‘안전한 생활’을 포함하여 편성 운영한다.	제4장 교과·수업일수 및 교과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10조 (교과)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고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바탕으로 본교의 교육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운영하되 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② 본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두고 각 학년별 교육과정 편성, 학칙에 정해지지 않은 체험활동의 운영 및 인정시간, 기타 학교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11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출석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에 따른 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제11조 (수업일수) ①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90일 이상으로 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현행	개정(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과정 자율화 운영에 의거 학년별 과목별 수업시수 20%를 증감 운영할 수 있다.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강화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5조)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되 본교의 체험학습규정에 의한다. (※시행령 제48조)
제5장 입학·재취학·전학·면제 및 유예·유학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제5장 제15조 (독촉, 경고 및 통보) ① 의무 취학 대상 아동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2.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 당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경고를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이후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입학생일 경우 그 경고를 학생 거주지의 동장 및 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에 통보하고, 재학생일 경우는 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에 통보한다.	제5장 제15조 (출석의 독촉, 경고 및 통보) ① 의무 취학 대상 아동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한다. 1.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 당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경고를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이후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학생 거주지의 읍·면·동장 및 교육장에 통보한다.
	제17조 (전학) ① 전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8조 (유예 및 면제) ① 의무교육대상자의 경우 퇴학(자퇴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사유에 따라 유예, 면제, 정원의 처리한다.	제18조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① 초중등교육법제14조제1항 및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보호자가 질병, 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정하여 보호자 및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재외국민 자녀의 입학 절차) ①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재외 국민이나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이 입학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은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9조) 다만, 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 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재외국민 자녀 등의 입학, 재·편입학 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령에 맞는 학년을 지정한다.	제20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학구 안에 거주하는 아동 또는 학생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한다.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 계약서, 거주 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귀국자 대상 입학 및 편입학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 (국의 유학에 관한 규정) ① 초등학교 학생은 국외 유학이나 국외 연수를 허가하지 않는다. ② 단 유학의 특례는 부모가 해외 근무에 따른 동거를 목적으로 한 출국이나 해외 이민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출입국사실 증명서 확인 절차에 의해) ③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그 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부모, 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	제21조 (유학의 특례) ①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 재학생의 유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친·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 이상과 함께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를 유학의 특례로 인정한다. (※국의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② 단, 부친·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부 또는 모의 공무원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정당한 해외 출국: 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해외취업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여야 하며, 증빙자료(해

현행	개정(안)
중인 경우 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이 영(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 기간(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의 체류기간), 실제류기간(출입국사실증명서), 재학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한다. ③ 그 부친·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그 부친·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 귀국을 할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2조 (취학의무의 면제등) ①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며 의무교육 대상자의 보호자가 신청하면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또는 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의 취학) 불법체류외국인 자녀가 본교에 전입하거나 최초로 입학하는 경우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아동에 대해서 거류신고증, 학구내 거주확인인우보증서 및 전·월세계약서 등을 제출받음으로써 전·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시교육청 초등 81200-753(2003.05.29.) 참조】
신설	제23조(유예자의 학적관리) 제24조(수료 및 졸업)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삭제
제6장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제6장 제28조 (용어의 정의) 제29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제30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제31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제32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	제6장 제25조 (용어의 정의) 제26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제27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제28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제29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내용	제30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급 학교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3. 조기진급 학생의 환원 조치 4. 기타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④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의견 신청 및 재평가 1. 위원회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2.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①항부터 ⑤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제8장 제33조, 제34조	제8장 제31조, 제32조
제9장 학생 포상 및 학생징계	제9장 학생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및 학업중단에 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
제9장 제35조, 제36조	제9장 제33조, 제34조
신설	제9장 제35조(학업중단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을 매년 수립 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 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에 방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3장 제47조 (학업중단숙려제) ① 스스로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서 그 사유를 제 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에 의거 유예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14일 이상의 숙려 기간을 둔다. ③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Wee센터 또는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 실적을 유예 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9장 제36조 (학업중단숙려제)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 혀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 로 선정한다. 1.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가정학습),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이동 등의 사 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2.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원(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등의 협의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4.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미인정결석 연속 3일 이상 3회 , 미인정결석 연간 누적 30일 초과인 학생 5. 그 밖에 학생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 와 부적응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 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사고 ,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 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으로 처리된 학생 4.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으로 처리된 학생 5. 검정고시 등의 사유로 학생 및 보호자가 강력히 숙려제를 거부하여 학교장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 단한 학생 6. 교권보호위원회의 출석정지 등 행정 처분에 의거하여 학 업이 중단될 예정이거나 중단된 학생 ④ 학업중단 숙려 기간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숙려 기간은 최소 2주 이상, 최대 7주 이하로 운영하며, 숙려 기간 내 주말, 공휴일, 휴업일 등을 숙려 기간에 산입 하여, 필요 시 방학 중에도 운영할 수 있다. 2.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인천광역시교 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준하여 실시한다.
신설	제9장 제37조(학교폭력전담기구)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장은 교감, 전문 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를 둔다. ② 전담기구 구성원 중에서 학부모는 3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③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가해 및 피해 사실여부 확인 2.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3. 학교폭력 실태조사 4.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실시 5. 학교폭력 사실 확인 조사결과 및 활동결과 보고 6.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기관 실태조사 의뢰 7. 피·가해 학생 긴급조치에 관한 보고 ④ 전담기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제9장 제38조(장애인권) ① 학생생활 관련 부분 (장애학생 인권보호)

현행	개정(안)
	1. 학교장은 장애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세부 내용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규정의 내용을 참조한다. ② 학교폭력 예방 관련 부분 (장애학생의 보호) 1.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학제 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0장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10장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11장 시정	
제40조 (학교 교육과정 운영 시정)	삭제
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정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② 수업은 9시 00분부터 시작하되 계절과 학교사정에 따라 시작 시각 및 운영 시간을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변경 운영할 수 있다.	
제12장 학칙 개정 절차	제11장 학칙 제·개정 절차
제13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12장 그 밖에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41조 (학칙 개정절차)	제42조 (학칙 제·개정절차)
①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법 제8조, 시행령 제9조)	① 학교의 장은 제1장 제4조제1항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4조 7호부터 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령 제9조 4항)	② 학칙의 개정은 학교장이 학칙개정안을 작성하여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 시행한다.
③ 본교의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제 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하며 5-10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11장 제41조, 제12장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11장 제42조, 제12장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 13장 제43조(유학의 특례), 제44조(불법체류외국인 자녀의 취학), 제47조(학업중단속려제)	삭제
신설	제4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법 제28조, 시행령 제54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제45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① 의무교육단계 아동, 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과 그 독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부 칙
① (시행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본 학칙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② (시행 세칙) 본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은 관련 세부규정(내규)를 만들어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본 학칙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③ 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 규정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시행 세칙) 본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은 관련 세부규정(내규)를 만들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③ 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 규정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4.18. 부분 개정하여 개정일부터 시행한다.